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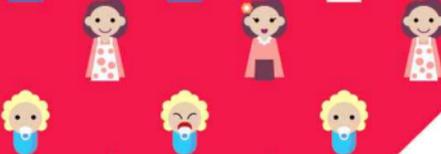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
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연금저축손해보험

롯데 명품 연금보험 (1701)

롯데손해보험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 위탁회사 및 기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이하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 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중단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88-3344 또는 1600-3434

→ 홈페이지 : <http://www.lotteins.co.kr>

※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협회·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1588-3344 또는 1600-3434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 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 (02) 3702-8603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층 정보관리팀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 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신용정보업팀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6
주요내용 요약서	12
보험용어 해설	14
보험금 등 지급시 적립이율 안내	17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9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21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28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33
제2조(용어의 정의)	33

제 2 관 연금의 지급

제3조(연금의 지급)	34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36
제5조(주소변경통지)	36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37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	37
제8조(청약의 철회)	37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8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39
제11조(계약의 소멸)	40
제12조(보험나이 등)	40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41
제14조(특별계정의 운용)	44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납입한도 등)	44
제16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45
제1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46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7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7
--	----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48
제2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9
제22조(해지환급금)	50
제23조(보험계약대출)	50
제24조(배당금의 지급)	50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51
제26조(관할법원)	51
제27조(소멸시효)	51
제28조(약관의 해석)	51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1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52
제31조(개인정보보호)	52
제32조(준거법)	52
제3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2

특 별 약 관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55
■ 단체취급 특별약관	56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59

별 표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1
--------------------------------	----

[참 고 : 관련 법규]	63
---------------------	----

꼭! 알아두세요

1. 이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강상태나 직업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4. 청약서를 기재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꼭 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연금저축 세제관련

-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로부터 5년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수령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text{주1)}} \text{ 현재 연금제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 50세 이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59세	60~64세	65세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50세 이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9년	10~14년	15년 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를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 연금개시 이후 지급받으시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종류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표

3. 수수료 관련 사항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 (또는 금액) 안내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기본보험료 월 30만원)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판매보수)	매월	1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1.21% (3,632원)	
	계약체결비용 (유지보수)	매월	1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1.24% (3,72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 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00%(9,000원)
			납입 기간 이후	2,500원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 금액(만원)	33.1	27.6	22.1	16.6	11.0	5.5	0.0	0.0
해지공제 비율 ^{주)}	9.2	3.8	2.0	1.2	0.6	0.3	0.0	0.0

주) 해지공제비율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적립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적립보험료의 2%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10년 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16,352원	9,000원

주) 기준 : 20년납, 월납기본보험료 월 30만원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주요내용 요약서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소멸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기본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 관계자	<p><신체·비용손해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p><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를 위한 보험료 <p><보장성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p><저축성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 <u>기본보험료</u> + 추가적립보험료 = <u>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u> +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음
보험목적	<p><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p> <p>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p>
보험가액	<p><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p> <p>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p>
보험금	<p><신체·비용손해 보장></p> <p>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p> <p><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p> <p>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p>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표

보험가입금액	<p>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p> <p>※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p>
보험년도	<p>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p>
책임준비금	<p>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p>
해지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공제를 함.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이라 함
평균공시이율	<p>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산출함. 단,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p>

보험금 등 지급시 적립이율 안내

◆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를 받은 기간	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청약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적립이율
반환기일 ^{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주)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 계약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1%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상기 공시이율은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 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별표

◆ 연금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시이율	
연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1. 사고접수

- ▶ 고객센터비즈팀 방문접수
- ▶ 고객센터접수 : 1588-3344 / 1600-3434
-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lotteins.co.kr) 접속 통합 보상센터 보험금 청구)

2.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

3.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4. 보험금지급

-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가능)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절
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별표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명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롯데손해보험(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1588-334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1.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구비서류

◆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초진기록지	병원
	▶ 사고증명서류 ① 교통상해사고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 교통상해 이외 사고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경위서)	경찰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피보험자 기준) ▶ 호적 또는 제적등본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진단서 ▶ 초진기록지 (질병인 경우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병원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2. 진단/입원/수술 보험금 구비서류

◆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진단보험금	암	▶ 확정진단 진단서 ▶ 조직병리검사 보고서 ▶ 초진기록지 ▶ 발생암별 기타 기록지	병원
	특정질병	▶ 확정진단 진단서 ▶ 검사 결과지 (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필요)	
	골절/화상	▶ 확정진단 진단서	
입원관련 보험금	특정질병관련입원비	▶ 확정진단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입원비	▶ 입퇴원 확인서	
수술관련 보험금	▶ 진단서 그리고 수술기록지 (진단명/수술명 기재)		
신생아관련	▶ 출생증명서(신생아 몸무게 기재) ▶ 간호정보조사지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기재)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초진기록지	병원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자동차보험 처리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치료비 개인 납부시 진료비영수증)	보험사/ 병원
산재처리	▶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산재급여 원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료보험 미처리	▶ 사고증명서류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의료보험 처리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퇴원영수증(치료비영수증) ▶ 재직증명서(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병원
	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중 택 1 (진단명/치료기간 기재)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병원/ 약국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련

특별약관
관련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원 일지별 병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카드영수증 제외) ▶ 재직증명서(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	--	--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비용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운전자비용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운전자 교통사고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서 및 법원 판결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 법원 경찰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소장(공소사실확인원으로 대체가능)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원 구치소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금액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경찰서 병원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면허정지/ 취소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취소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 소견서 또는 진단서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병원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병원

◆ 기타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강력범죄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경찰서 병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 사고경위서 ▶ 사진 등 사고증명서류 ▶ 견적서 또는 치료확인서류 ▶ 피해자 신분증,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포함) 	
홀인원/ 알바트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스코어 카드) (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성명, 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 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 ▶ 신분증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입자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
표

5. 재물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6. 배상책임 보험금 구비서류

◆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 사고별 추가 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대인배상 사고	▶ 진단서(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병원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대물배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영수증 ▶ 수리견적서 ▶ 수리비영수증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 피해물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등) 	구입처/ 수리업자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센터 1588-3344/1600-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절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표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고객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 인터넷 주소 : www.lotteins.co.kr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주소 : www.fcsc.kr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 전화 : (02)3702-8500
- 인터넷 주소 : www.knia.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72
- 인터넷 주소 : www.ccn.go.kr

모집질서 확립 안내

1.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3.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insucop.fss.or.kr

---<사례 : 연금수령액 과소>---

◆ A씨는 연금보험 가입 후 연금수령 시점에서 본 계약 체결 시 예상했던 수령액의 50%도 안되는 금액을 받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다.



⇒ 확정이율로 부리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상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이 동일할 수 있으나,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상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금보험은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으로, 대부분의 상품이 변동이율을 적용

합니다).

1998년 당시 상기 계약 체결 시 연 9% 이율 적용, 최저보증 이율 4%, 월 100,000원 15년간 납입 조건으로, 월 연금수령액 15년간 300,000원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연금수령액은 월 140,000원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줄어든 것은 가입 시점 당시보다 적립이율 하락에 따른 결과인 점, 보험증권 상에도 적립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예시된 점 등을 들어 민원인을 이해시켰습니다.

연금보험은 가입 후 적립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적립이율, 최저보증이율의 의미와 그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종류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표

**연금저축손해보험 롯데
명품 연금보험 (1701)
약관**

롯데손해보험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자가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3.0%)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점
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 통 약 관

특별약관

별 표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매3개월 또는 매년 보험료 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보험료의 구성 >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추가적립보험료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으며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를 납입한도로 합니다.
- 보험료 = 기본보험료[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 연금의 지급

제3조(연금의 지급)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 형태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말합니다. 아래표 참조)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계약자 사망 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연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 V(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매년마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증주기(년)」마다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증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연금액 체증주기(년) : 1년, 3년, 5년 ※연금액 체증률 : 5%, 10%, 15%, 20%

- ②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계약의 세계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의 세계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증형의 경우 공시이율 변경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⑥ 회사가 제5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가입자주요내용
요약서보험용어
해설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보험금
지급절차보험금 청구
구비서류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보통약관
관특별약관
관

별표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 V(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 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를 적립하는 이율로써 만기환급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환급금은 많아지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만기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고 공시이율이 0.5%, 최저보증이율이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0.5%일 경우라면 경과기간별로 적립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0.5%)로 적립됩니다.

제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4.0%)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험약관
관련

특별약관

별표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절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별표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형태
 2.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감액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 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3조(연금의 지급)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2조(보험나이 등)

-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

시 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직전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9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7년 4월 13일
 ⇒ 2017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최초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보험나이 40세
 ⇒ 2017년 2월 28일, 보험나이 41세
 ⇒ 2020년 2월 29일, 보험나이 44세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종류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신청이유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4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로부터 5년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수령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 50세 이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59세	60~64세
최소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50세 이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9년	10~14년
최소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
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4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입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납입한도 등)

- ①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② 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

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적립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보험계약 성립일 이후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6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외합니다)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12개월, 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를 포함합니다)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유예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지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지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지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중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

가입자
의사향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점
지급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 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별표

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기후 유지관리비용)」(이하 「납입유예공제액」이라 합니다)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입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납기후 유지관리비용) : 매월 계약해당일

제1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2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절별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이하 「부활(효력회복)보험료」라 합니다)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하 「부활(효력회복)하기 전 기간」이라 합니다)만큼 연기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기후 유지관련비용)」(이하 「납입부활공제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체결 시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매 보험료납입해당일(이하 「보험료납입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약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

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표

제22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3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0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
려 드립니다.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소멸시효)

-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합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
약의 청약용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약관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 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
표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1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

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분쟁사례

보통
약관

특별
약관

별
표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 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만큼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체에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 소속원을 계약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 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 시 5인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지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의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지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 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 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 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추가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추가 또는 교체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4조 (적용보험료)

-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 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적용특칙)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표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가입자
의사
사항

주요
내용
요약
서

보험
내용
해설

보험
금
등
지급
시
적
용
이
율

보험
금
지
급
절
차

보험
금
청
구
구
비
서
류

오
인
하
기
쉬
운
주
요
분
쟁
사
례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은 제외합니다)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 연금공시이율V의 50%
			1년 초과기간 : 1%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연금공시이율V
	연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연금공시이율V의 50%
			1년 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공시이율V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금의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험금 등
지급시적립이율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통약관
관

특별약관
관

별
표

참 고 : 관 련 법 규

아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를 따릅니다.

【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MEMO

MEMO